

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(대지)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상정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(현 부천시시설관리공단)은 2007. 1월 제13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상사용 동의로 대지(토지)는 체비지로서 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·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
- 현 대지(토지)가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회계간 재산이관 되었으며, 이관된 대지(토지)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대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현황
 - 건축년도 : 1985년(철골철근콘크리트)
 -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
 - 대지 : 1,164.5m²
 - 현 사용기관 : 부천시시설관리공단

재산의 표시			목적 및 용도	2008년 사용료	부가가치 세액(원)	비고
소재지	지목	지적(m ²)				
원미구 심곡동 181번지	건물	1,576.4	사무실	-	-	무상사용
	대지	1,164.5	대지 및 주차장	66,958,750	6,695,870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없음	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(동의)

6. 소수의견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(대지) 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14호
의결 년월일	2008. 1. 23 (제141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. 1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(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)은 2007. 1월 제13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상사용 동의로, 대지(토지)는 체비지로서 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·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을 하였으나
- 현 재산(대지)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회계간 재산이관된 대지(토지)에 대해서도 부천시의회에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무상 대부코자 함.

□ 공유재산 현황

- 건축년도 : 1985년(철골철근콘크리트)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 4층
- 대 지 : 1,164.5m²
- 현 사용기관 : 부천시 시설관리공단

재산의 표시			목적 및 용 도	2008년 사용료	부 가 가치세액	비 고
소재지	지목	지적(m ²)				
원 미 구 심곡동 181	건 물	1,576.4	사무실	-	-	무상사용
	대 지	1,164.5	대지 및 주차장	66,958,750원	6,695,870원	

※ 사용료 부과: 공시지가(2,300천원)×면적×25/1000

부가가치세액: 사용료 × 10/100

□ 무상사용허가 추진 배경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회계간 재산이관되어 대지(토지)에 대해서도 부천시의회에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대부하여 예산절감(8,500천원)에 기여하고자 함

□ 동의요구 내용

-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사용 대지(토지)에 대해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

□ 관련규정

-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
 -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
 -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